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45회 제2차 정례회 (2020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-169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3일(금)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3일(금)

2. 제출사유

2020. 7. 2. 부터 시행된 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(안 제3조)
- 다.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(안 제6조)
- 마.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(안 제7조)
- 바. 판매대행점·운영대행사의 협약 등(안 제8조)

4. 관계법령

- 가. 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개정안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

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로페이¹⁾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인 “마포사랑상품권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0년 1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-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바,
 -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
 -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
 - 안 제3조는 마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명시하였고, 상품권의 종류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선정한 사항, 권면금액, 상품권의 유통기간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4조와 제5조는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
 - 안 제6조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.
 -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할인판매, 추가 충전금 지급 등 마포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을 담고 있고
 - 안 제8조는 판매대행점·운영 대행사와의 협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1) “제로페이”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, 서울시와 지자체, 금융회사,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한다.

- **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**
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자 제정 근거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법률에도 부합하고, 또한 **코로나19**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짐.
- 본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을 살펴보면,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금이 거대 기업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원의 순환 활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조례안 중 안 제3조에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반으로 한 본 상품권이 IT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,
-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비(市費)가 중단될 경우에는 할인율이 낮아져 상품권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으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【참고자료】

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〉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
2.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〉

제3조(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 법 제10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